

2015.08.04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

개정이유

- 어린이 완구, 전기용품, 저울 등 국민 소비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신규 품목지정 및 목재가공품 등 검역안전성이 높은 일부 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제외로 통관 규제완화 추진
- 기존에 각 개별법령상에서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물품을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추가지정하여 개별법령과의 법적통일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이는 새로운 의무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세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시행일자 : 15. 7. 31.(금)

2. 주요 개정내용

- 수입 : (현행) 35개 법령 · 6,652개 →
(개정안) 36개 법령·6,662개 [증78,감68]
- 수출 : (현행) 12개 법령·1,271개 →
(개정안) 11개 법령·1,363개 [증100,감8]

2015.08.04

3. 개정내용

1. 어린이용품 안전강화 등을 위한 세관장확인품목 강화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HSK 4개 품목)
봉제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확대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HSK 10개 품목)
전기용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충전지, 절연전선, 스위치 등 품목 추가
- **식물방역법** (HSK 1개 품목)
원예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유기물 광물재료(피트모스) 품목추가
- **계량에관한법률** (HSK 2개 품목)
공정한 시장거래 보장을 위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저울에 대한 세관장 확인대상 품목 추가
- **방위사업법** (HSK 100개 품목)
국제무기거래협약 등에 따른 불법무기수출방지를 위해 방위사업법상 허가대상 수출물품 품목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HSK 2개 품목)
조제분유 및 조제유제품 품목 추가

2. 검역안정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품목 제외

- **식물방역법** (HSK 12개 품목)
광물질 또는 식물가공품 등으로 검역안정성이 높은 품목 제외
 - **사료관리법** (HSK 1개 품목)
사료로 사용되지 않는 '닭시용 떡밥' 제외
 - **양곡관리법** (HSK 16개 품목)
쌀 관세화* 및 수출허가제도 폐지 등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세관장확인 대상 법률에서 제외
- * 다만, 양허관세율 적용 관련 추천(허가서)는 기존과 같이 세율심사시 확인

2015.08.04

3. 세관장확인제도 운영 원활화 등을 위한 지침사항 등 반영

- 화학물질관리법의 '금지물질(HSK 63개품목)'에 대한
세관장확인방법*을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 (현행) 수입할 수 없음 → (개정안)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
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
할 수 있음
-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생략하는 범위*를
당해법령 규정과 일치화
* 축산물검사 세관장확인생략대상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축산물검사생략대상)에 따른 대상물품으로 명시화
- 신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품목번호 추가지정
* '공기주입 보트' 확인대상번호에 HSK9506.29-0000(수상운동용구)
추가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15.7.1)에 따라 '물휴지' 품목의
소관법령* 정정
* (현행)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9개) → (개정)화장품법(9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15.6.4)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
리법 대상으로 운영중인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소관 법령 정정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59개)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55개)+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19개) :
중복지정 14개 포함